

의정정보 2012-6호

1. 최근 제·개정 법령	3
2.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5
3.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61
4. 행복한 책읽기	74

모두 보기

최근 제·개정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5)
- 식물신품종 보호법(6)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8)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12)
- 먹는물 관리법(13)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17)
-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25)
-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28)
-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32)
-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37)
-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42)
-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44)
-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49)
-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54)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 대한민국 정부포털, 대학생들이 알린다(63)
-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65)
- 전국 지자체, 자활기금 집행 늘려(68)
- 느낌은 나무 기능은 플라스틱, '합성목재'(69)
- 한국관광을 빛낸 10개의 별 선정(71)

행복한 책임기

-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74)

최근 제·개정 법령

최근 제·개정 법령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5
2. 식물신품종 보호법.....	6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8
4.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9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
6. 먹는물 관리법	13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 2012.6.1 시행 2012.6.2]

1. 제정이유

친환경 인증제도의 다원화로 사업자 및 인증기관이 이중으로 지정되고, 인증사업자와 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인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며, 인증제도에 대한 동등성(Equivalency) 규정이 없어 통상문제가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외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해서는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원화된 인증제도를 일원화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관련 제품의 인증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를 통합 일원화하여 유기식품 등 인증제도와 무 농약 농수산물 등 인증제도로 체계화함(안 제명, 제19조 및 제34조)

나.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인증사업자가 부정행위 시 인증취소 외에 인증표시 정지 제거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추가함(안 제22조, 제24조 및 제27조)

다.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이 법에 따른 인증제와 동등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라. 부정행위 금지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사업장 불시검사, 무상 시료 채취 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인증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및 인증기관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안 제30조, 제31조, 제60조 및 제62조).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식물신품종 보호법

[공포 2012.6.1 시행 2012.6.2]

1. 개정이유

현행 「종자산업법」은 종자의 보증·유통관리 등에 관한 실체적 규정과 품종보호 관련 절차적 규정이 혼재되어 법률의 체계 및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종자산업법」 중

식물신품종의 출원·심사 및 등록 등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분리하여 별개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식물신품종과 그 육성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물신품종 보호대상 확대(안 제3조)

- 1) 우리나라는 2002년도에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의 회원국이 되면서 2012년부터 모든 식물의 신품종에 대하여 보호의무가 발생함.
- 2) 이 법에 따른 신품종 보호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함으로써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신품종 육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품종보호료 납부 지연기간에 따른 납부료 차등화(안 제47조)

- 1) 매년 내야 하는 품종보호료의 납부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품종보호료의 2배를 납부하면 품종보호권이 유지되나, 납부 지연기간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품종보호료의 2배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 2) 품종보호료 2배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내도록 하여 품종보호료를 먼저 납부하는 품종보호권자에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품종보호료의 성실한 납부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품종보호료 보전 및 납부 등에 의한 품종보호권 회복(안 제48조 및 제49조)

- 1) 품종보호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하여 품종보호권이 소멸될 경우,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
- 2) 품종보호료의 일부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품종보호료의 일부를 보전(補填)하는 경우 등에는 품종보호권이 회복되도록 함.

라. 품종보호권 침해죄에 대한 벌칙의 상향 조정(안 제131조)

- 1) 현재 품종보호권 침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허법」상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벌칙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공포 2012.6.5 시행 2012.8.2]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공고하도록 하고, 사회적 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 3년간 사회적 기업 인증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1275호, 2012. 2. 1. 공포, 8. 2.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통보 및 공고 절차,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공포 2012.6.7 시행 2012.6.7]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를 위하여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경우 과거의 주소변동사항과 병역사항을 생략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도록 하고, 가정폭력피해자가 본인 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또는 등·초본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서의 등본 등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경우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제한(안 제13조제11항)

- 1) 현재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과 병역사항도 포함될 수 있어, 그 신청 목적에 비하여 과도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있음.
- 2)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경우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과 병역사항을 생략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도록 개선함.

나. 가정폭력행위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추가(안 제13조의2제4호 신설)

가정폭력피해자가 본인 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또는 등·초본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 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추가함.

다.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민등록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자료(안 제18조의2 신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자료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라. 금융회사 등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자료의 완화(안 별표)

다수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는 금융회사 등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반송된 내용증명 대신 채무자 등의 현재 주소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반송된 우편물 등을 증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1항의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 2012.6.1 시행 2012.6.1]

1. 개정이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기업 분할·분할 합병이나 물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그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자의 공공납품 기회 확대를 위하여 일정 금액 미만의 소규모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 체결을 의무화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를 활성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와 관련하여 교원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교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교원에 대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의 징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체결을 의무화함(안 제4조제2항 신설).

- 나. 회사의 분할, 분할합병, 물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함(안 제8조의2
제1항제1호 신설)
- 다.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고 그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
업자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함(안 제8조의2
제1항제2호 신설).
- 라.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이 아님을 확인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5조제1항제1호).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먹는물 관리법

[공포 2012.6.1 시행 2012.6.1]

1. 개정이유

시·도지사는 먹는샘물 제조에 이용가치가 높은 샘물의 부존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을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샘물보전구역에는 각종 오염유발시설의 설치 행위를 금지하여

샘물의 오염을 방지하며, 해당 샘물에서 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일부를 시·도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시·도지사의 샘물보전구역 지정을 촉진하여 먹는샘물의 수질안전성을 도모하는 한편,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업무에 관하여 관리·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도지사는 샘물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 나. 샘물보전구역에서는 가축의 사체를 매몰하는 행위와 폐기물 처리시설·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폐수배출시설·공공하수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의5 및 제58조제1호의2 신설).
- 다. 환경부장관은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에게 해당 샘물의 개발로 인하여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9항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타 사·도 제·개정 조례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7
2.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25
3.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28
4.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32
5.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37
6.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42
7.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44
8.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가정 지원 조례49
9.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54

1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교권보호를 위한 교육당사자 상호간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권 침해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바람직한 교육 문화 정착과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권보호의 목적을 상세히 규정함(안 제1조).
- 나. 교육당사자(교육감, 학교장, 교원, 학부모, 학생)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6조, 제7조, 제8조).
- 다.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함(안 제9조 및 제10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당사자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2. "교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로서 교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교원의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제반 권한을 말한다.
3. "학교"란 서울특별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4. "교권침해"란 교육행정기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동료 교원, 학교 행정직원,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언론 등에 의해 제2호의 교권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 받는 현상을 말한다.
5. "교육분쟁"이란 학교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당사자 간 발생한 분쟁을 말한다.

제3조(교권보호의 기본원칙) 교권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은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당연히 누리며, 「대한민국헌법」과 개별 법률이 정한 이외의 이유로 부당하게 제한당하지 아니한다.
2. 교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교원의 교육활동은 법령에 따라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 ② 교원은 법령에 따라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대해 자율권을 갖는다.

③ 교원의 수업 등 교육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법령에 따른 절차 이외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교육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공개될 수 없다.

④ 교원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원에게 폭력, 폭언, 조롱, 희롱, 꺾하, 농락 등의 방법으로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거나 그 밖의 교육적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의 학생에 대한 징계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다.

⑤ 교원은 학부모가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교원에게 폭력, 폭언, 조롱, 희롱, 꺾하, 농락 등의 방법으로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차별 및 불이익의 금지) ① 교원은 성별, 종교, 신념, 나이, 출신지역, 신체적 조건,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그 외의 법에서 정하는 사유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징계나 불이익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노동조합이나 교원단체의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학교 및 학교법인은 특정 노동조합이나 교원단체의 가입 또는 불가입을 고용 및 승진의 조건으로 할 수 없다.

④ 교원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학교는 특정 종교의 신앙 또는

불신앙을 고용 및 승진의 조건으로 할 수 없다. 다만, 특정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의 경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제6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각종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며,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고, 교권침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2.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3.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⑤ 교육감은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교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해당 교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교원은 제외한다.

⑥ 교육감은 교원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교원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⑦ 교육감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에 교권침해 관련 교육을 위한 일정 시간을 할당하여 운영한다.

⑧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7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장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

1. 학교장은 지역사회, 학부모, 학생으로부터 교원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 학교장은 학교교육계획, 교육과정, 예·결산 그 밖에 교육 활동 전반에 관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과를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3. 학교장은 보직교사 임면, 업무분장, 담임배정, 학년배정, 전입요청, 초빙 등의 교원인사관리를 인사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4. 학교장은 교원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 행정업무전담팀을 운영하고 업무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학교장은 비정규직 교원에게 근무조건, 업무분장 등에 있어서 정규직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1.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2. 교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 동호회활동을 위한 예산 편성
3. 교원의 학급운영 및 학생상담을 위한 예산 편성
4. 교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 학급운영 및 학생상담을 위한 시간적, 공간적 여건 확보

③ 사립학교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은 학교법인 이사장 및 학교장의 책무로 본다.

제8조(교원, 학부모, 학생의 책무) ① 교원은 동료교원 및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② 교원은 학생의 바람직한 교육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신을 연찬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폭력, 약물, 자살 등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여야 하며, 학생과의 건전한 소통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인성함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는 교권을 존중해야 한다.

⑤ 학생은 교권을 존중하고, 학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교권보호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학교장 또는 분쟁당사자가 교육감에게 조정 신청한 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단위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2.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및 대응
3. 교권보호를 위한 상담 및 관계자 교육
4. 그 밖에 교권보호, 학생 및 학부모의 학습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할 수 있다.

1. 교육분쟁이 교직원의 비위나 과실로 인한 것이고 그 수준이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의 징계
2. 교육분쟁의 원인이 학생의 교권침해로 인한 경우 학생의 전학 또는 학교 재배정

3. 교육분쟁의 원인이 학부모의 교권침해로 인한 것이고 그 수준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기관에의 고발
4. 교육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안이 민사적 배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 결정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의2의 법률지원단을 통한 피해자 조력
5. 교원이 학부모나 학생 등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하여 심리적, 육체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담 및 치료의 제공
- ④ 위원회가 제3항의 권고여부를 판단할 경우 미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학생인권위원회 및 학생인권옹호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단체가 추천하는 학부모위원, 전문가위원 등으로 구성하고, 교육감이 임명한다.
- ⑥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 ① 교육감은 교권침해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하여 교권보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지원센터의 구성은 지원센터장 1명과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지원 및 사무처리를 위한 직원을 둔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교권 관련 계획 수립 및 교원연수 실시
2. 교권침해 신고접수 및 상담
3.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4.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5.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6. 언론 보도 등 교원의 명예훼손에 따른 적극적인 해명과 정정보도 요청
7. 그 밖에 교권보호와 교권침해 구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신고접수된 교권침해 및 분쟁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립학교의 교권보호 및 교육활동 지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사립학교의 교권보호 및 교육활동 지원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 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개방화장실을 지정함으로써 화장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나, 개방화장실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증가에 상응하는 관리비용의 보전대책이 구·군의 제한된 예산으로 지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시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바,
- 나.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이 부담해야 하는 관리운영비를 지원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개방화장실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장려·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의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다.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개방화장실 지원을 위한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실태조사를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관리운영비 교부받는 자의 의무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선량한 관리자로서 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
- 편의 위생용품을 비치·제공
- 관리운영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바. 관리운영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자 등에 대한 반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지정한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가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2. “관리운영비”란 개방화장실의 편의 위생용품 및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등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장려·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이 개방화장실을 인지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구청장등과 협의하여 각종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리운영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구청장등에게 개방화장실 지원을 위한 관리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운영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건물소유자 또는 건물관리자로 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실태조사를 구청장등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무) 관리운영비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 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
2. 편의 위생용품을 비치·제공
3. 관리운영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8조(제재) 시장은 관리운영비 등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관리운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7조 각 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학교에서 시행하는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에 대하여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그 보호자의 자율적인 학습권 및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정규교육과정외학습” 및 “학습선택권”의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 나. 학습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다. 학습선택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학습선택권을 갖도록 함. 정규교육

과정을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자의적으로 편성하거나 운영하지 않도록 함

라.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에 학습선택권업무담당자를 두게 하고 직무를 정함(안 제5조)

마. 학습선택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침해당했을 경우 학습선택권업무담당자에게 상담 및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학습선택권의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

사. 상담 및 조사요구 결과를 보고받거나 실태조사 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8조)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에 대하여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그 보호자의 자율적인 학습권 및 교육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이란 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 외에 시행하는 모든 학습을 말한다.
3. “학습선택권”이란 학교에서 시행하는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하여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참가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습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한 학습선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학습선택권의 보장) ① 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습선택권을 갖는다. 다만, 학생과 그 보호자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육과정을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자의적으로 편성하거나 운영하여 학습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학습선택권업무담당자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에 학습선택권업무담당자를 둔다.

② 학습선택권업무담당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선택권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조사
2. 학습선택권 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
3. 학습선택권 보장을 위한 홍보 및 제도 개선
4. 그 밖에 학습선택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상담 및 조사 요구) ① 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습선택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침해당했을 경우 학습선택권업무 담당자에게 상담 및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학습선택권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조사를 요구한 사람과 그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상담 및 조사를 요구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습선택권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조사 요구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상담 및 조사를 요구한 사람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학습선택권의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교육감은 제6조제3항에 따른 보고의 결과 또는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학교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1. 제정이유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의 개정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 주체가 군수·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의 적정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장기계획과 연계한 연차별 정비 및 투자내역, 수질 불량 대책을 수립함(안 제3조).
- 나. 시장은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원수는 5년, 정수는 3년간 보존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자에게 통보함(안 제6조).
- 다.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함(안 제13조).
- 라.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수도시설을 유지관리, 비용분담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 대표협의회를 설치함(안 제15조).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 시설”이라 한다)의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소규모 수도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3조(정비계획 수립)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계획에는 대구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의 상수도 중·장기계획과 연계한 연차별 정비 및 투자내역, 수도시설의 수원고갈 또는 수질불량에 대한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① 시장과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전, 보수, 소독 등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시장과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잠금장치를 하여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원수는 5년, 정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수질검사 결과를 당해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회 및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가 소규모수도시설을 개·보수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견의 의견을 들어 시설의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가 공급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또는 협의회 폐지동의서
3. 폐지 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32조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관리비용

제13조(관리비 분담)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계량기 설치) 관리자는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4장 사용자 대표협의회

제15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수도시설의 유지관리, 비용분담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구성) 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관리자는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관리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관리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유지·관리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 그 밖에 급수에 관한 사항

제18조(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관리자가 소집한다.

1.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교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자치구의 조례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과 관련한 각종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

5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1. 제정이유

지역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나. 일자리 창출 계획의 수립(안 제4조)
- 다. 일자리 창출 촉진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안 제5조)
- 라. 구직자를 위한 직업상담, 인력양성 등 취업지원(안 제6조)
- 마.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평가(안 제7조)
- 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안 제8조)
- 사. 기업지원 및 관급공사 심사에 일자리 창출기여도 반영(안 제9조)
- 아. 지역 내 기관, 기업 등에 지역 고교 우수한 졸업자 채용 권고(안 제10조)
- 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안 제11조)
- 차. 일자리 창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탁근거 마련(안 제12조)
- 카.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13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내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는 지역단위의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 창출 대책
2. 미취업자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지원
3.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여건 향상
4. 노사화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5. 시의 각종 정책과 일자리창출 연계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2. 창업촉진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3. 여성,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취업지원 사업) ① 시장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연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 취업서비스 제공
2. 중소기업 맞춤형 취업지원
3.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4. 그 밖에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추진계획과 성과 등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일자리 영향 평가) 시장은 시의 각종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고용우수기업 인증제)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인증된 고용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자금 지원 우대 등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일자리 창출 기여도 반영)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업지원, 관급공사 등 심사에 일자리창출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고졸채용) 시장은 시에 있는 공공기관, 기업 등에 지역 고등학교 우수한 졸업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기관·단체에서 수행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후생복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나 기관·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1. 제정 이유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이 활성화 되도록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장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나.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 다. 장기등 기증 등록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장기등 기증자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마.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의 기증이 활성화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기등”이란 신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
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인체조직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시장은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등 기증 등록신청 접수창구 설치) ①시장은 장기등 기증을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장기등 기증 등록신청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자치구청장에게 장기등 기증 등록신청 접수창구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장기등의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감면
2. 개별 조례가 정하는 각종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3. 그 밖에 시장이 장기등의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포상) 시장은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1. 제정이유

장애인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장애인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체육 진흥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장애인 체육진흥 및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장애인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장애인 삶의 질 제고에 기여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한 도내 거주 장애

인을 말함

나. 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안 제3조)

-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다.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안 제4조)

- 도지사는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함

라. 장애인체육 편의 제공 (안 제5조)

- 도지사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인력배치를 하여야 함

마. 장애인체육 동호회 지원 (안 제6조)

- 도지사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을 보호·육성하고 장애인체육 동호회를 지원할 수 있음

바. 장애인 운동경기부 설치 (안 제7조)

- 도지사는 장애인 선수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장애인 운동경기부를 둘 수 있음

사. 운영의 위탁 (안 제8조)

- 도지사는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음

아. 포상 (안 제9조)

- 도지사는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

자. 보고·검사 (안 제10조)

- 도지사는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 동호회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명하거나 업무관련 장부·서류·물건을 검사할 수 있음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장애인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장애인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 생활체육”이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전문체육”이란 장애인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5. “장애인선수”란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동호회로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
7. “장애인 운동경기부”란 장애인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에는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시설 개선과 확충, 장애인선수 육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체육 편의 제공) 도지사는 장애인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 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 활동 관련 정보 및 의료서비스 제공

제6조(장애인체육 동호회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체육 동호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운동경기부 설치)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전문체육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도정 홍보와 장애인 선수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장애인 운동경기부(이하“운동경기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정한 사업의 추진을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동경기부의 위탁관리에 있어 수탁자는 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합숙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에 있어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보고·검사)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나 장애인체육 동호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1. 제정이유

- 가. 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 국제사회와 공유, 세계빈곤퇴치 기여로 보편적 인류애 구현과 새마을운동 종주도의 글로벌 위상제고
- 나. 기업, 민간단체 및 UN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세계화사업 구상, 추진
- 다. 세계화사업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및 사후 관리에 필요한 법인설립을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가.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목적(안 제1조)
 -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한 종주도의 위상제고
- 나. 재단의 설립과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2조)
- 다. 재단의 주요 사업(안 제3조)
 - 새마을세계화 중·장기 전략수립 및 국제협력모델 정립
 - 각종 위탁사업 및 연구용역,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 라.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안 제4조)
 - 재단 기본재산을 경상북도의 출연금 및 도내 시군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
- 마.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민법”에 근거하여 정관에 규정토록 명시(안 제5조)

바. 임원(안 제6조)

- 임원의 구성, 이사장 및 대표이사의 선임방법 등 명시
- 임원의 임면, 임기는 정관에 정하도록 함

사. 이사회(안 제7조)

- 재단의 중요사항 심의·의결을 위하여 이사회 두며,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도록 함

아. 출연금 교부(안 제8조)

- 도지사, 시장·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교부할 수 있다.

자. 운영재원 등 (안 제10조)

- 재단의 시설·운영,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사업수익금, 이자수입,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차. 사업의 위탁 및 운영지원(안 제11조)

-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새마을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재단에 위탁 가능
- 필요한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한다.

타.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확인·검사 등(안 제12조 내지 제13조)

-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에 관해 필요한 서류와 시기명시
- 도지사는 재단의 사무에 대해 확인하고 검사 할 수 있도록 규정

파. 공무원파견 (안 제15조)

- 재단 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파견 규정 명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인류공영에 기여함은 물론, 새마을운동 종주도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운영)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새마을 세계화 중·장기적 전략수립 및 국제협력모델 정립
2. 새마을운동 연구, 이론정립 및 전문인력 확보 등 학술적 기반 조성 사업
3. 새마을봉사단 파견 및 시범마을 조성사업
4. 외국인 지도자 초청 연수 및 글로벌 새마을 포럼 운영
6. 수요조사, 프로젝트사업 시행·평가 등 제반 해외 새마을 사업
7. 민·관 협력사업 및 국제기구 지원사업
8.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정관) ① 재단은 정관에 「민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규정
2.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회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대표이사는 공모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③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대표이사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출연금 교부)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재단의 사업 수익금, 기금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입,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1조(사업의 위탁 및 운영지원)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새마을세계화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 부담은 위탁기관이 부담한다.

②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재단과 관계있는 기관·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확인·검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단사무의 확인 및 검사를 위하여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가족 친화적 환경조성 대상을 기업, 마을 등으로 확대하여 일하고 싶은 기업,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 특히,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 나.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 다.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직장환경 및 마을환경 조성 촉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제10조).
- 라. 도지사는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 마. 도지사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융자 대상자 선정 및 사업성과 평가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에 이바지한 사람과 기관·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제도”란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마. 가족관계 증진제도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 가족 초청행사, 정시 퇴근제, 육아의 날, 가정의 날, 부모님 직장 체험 등 운영 지원 등

바.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등

사.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 등

3. “가족친화기업”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구현하는 기업을 말한다.

4.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지사와 행정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2. 민간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3.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연구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9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2.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3.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 양성
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6. 그 밖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제10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보급
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지원
4.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② 도지사는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3.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4.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직장보육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가족친화 기업 지원)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융자 대상자 선정 및 사업성과 평가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사업에 이바지한 사람
2. 가족친화 사회환경사업에 이바지한 기관·단체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1. 대한민국 정부포털, 대학생들이 알린다. 63
2.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65
3. 전국 지자체, 자활기금 집행 늘려 68
4. 느낌은 나무 기능은 플라스틱, ‘합성목재’69
5. 한국관광을 빛낸 10개의 별 선정71

1 대한민국 정부포털, 대학생들이 알린다.

- 대한민국 행정·공공기관의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안내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포털(www.korea.go.kr)’을 알리기 위해 대학생들이 발 벗고 나선다.
- 행정안전부는 6월 1일(금) 정부중앙청사에서 40명으로 구성된 2기 대학생 체험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 ‘아띠2.0’으로 불리는 대학생 체험기자단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 정부포털 사이트와 SNS, 블로그,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서 UCC 경진대회 참여, 정부기관 취재 등 다양한 체험 활동도 하게 된다.
- ‘아띠2.0’ 2기는 특히, 딱딱하고 어려운 공공정보 서비스를 UCC, 웹툰, 패러디 등을 활용해 재미있게 알리고, 독거노인과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정보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유익한 공공정보를 알려주는 등 다양한 오프라인 봉사 활동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 친한 친구라는 뜻의 우리말 ‘아띠’와 참여와 소통을 근간으로 웹2.0의 철학이 담긴 ‘아띠2.0’은 대한민국 정부포털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작년에 활동했던 ‘아띠2.0’ 1기는 정부포털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약 276회에 걸쳐 이용자 입장에서 생생한 체험 기사를 게재했고, 포스터와 리플렛 기획 등에 참여하는 등 대한민국 정부포털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 황서중 국가대표포털 기능개선추진단장은 “아띠 2.0 2기는 대한민국 정부포털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화면 디자인(UI)이나 메뉴 개편에도 참여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불 입>

<대한민국 정부포털 안내>

□ 개 념

-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한 곳(Single Window)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부대표 포털사이트(web: <http://www.korea.go.kr> /mobile: m.korea.go.kr)

□ 실생활 밀접형 서비스

- (생활형 정보) 미환급금 찾기, 생활민원·당번약국 안내 등
- (테마별 정보) 교통정보, 건강정보, 부동산 정보 등 안내
- (이용자별 정보) 학생(교육정보·자원봉사 등), 직장인(경력개발·자동차면허 등), 신혼부부(임신출산·내집마련 등)

□ 이용자 편의기능

- (정부서비스 검색)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약 2만 3천개의 정보검색
- (키워드 검색) 기본검색 외에 키워드 자동완성 기능, 검색창에서 바로가기 기능 등

□ 뉴미디어 서비스

- (블 로 그) blog.naver.com/korea_gov (이름 : 편통)
-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vkorea (이름 : 편통이)
- (트 위 터) twitter.com/govkorea

□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나날이 오르는 물가 때문에 고민이 많은 요즘, 지방자치단체가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 경기도는 북부지역에 군부대가 많은 점에 착안해 군인 가족에게 다양한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포천시는 신병 면회객에게, 파주시는 군장병과 가족들에게, 양평군은 신병들과 가족들에게 각각 10~20% 할인된 가격으로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고 있다.
- 충북도는 청주와 청원에서 적용되던 구간요금제를 폐지해, 많게는 2,900원에 이르던 버스요금을 1,150원으로 단일화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지방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 강원도는 지역주민 감소 등으로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 이동 판매장터를 개설하는 ‘굴러라! 감자원정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6월 2일~3일 남이섬을 시작으로, 서울 노원구·은평구·가든5 등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 이처럼 물가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 내용은 5월 30일 ~31일 이틀간 전남 완도에서 개최된 「제17회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 이 대회는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물가안정 우수기관을 선정·시상했다.
-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최우수상)은 ‘물가안정 기획 홍보 추진’ 및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시책 등이 돋보인 경기도가 차지했으며, **우수상(국무총리상)은 충청남도**, 장려상(행정안전부장관상)은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가 각각 수상했다.

《 주 요 우 수 사 례 》

- 하수도처리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 합리화, 착한가격업소 Best 10 선정 (경기)
- 민+관 물가관리 거버넌스 구축, 지역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 (충남)
- 골목상권 안정자금 대출금리 지원, 월2회 착한가격업소 가는날 운영(광주)
- 주유소 최고·최저 공개를 통한 유가인하 유도, 농어촌 단일요금제 시행을 통한 교통비용 경감 (충북)
- 착한가격업소 대상요금 면제(월 30톤), 간부공무원 릴레이 전통시장 투어(경북)

-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16개 시·도 지역경제관계관, 시·도 발전연구원 등 2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발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 또한, 시도 물가관계관 회의를 별도로 개최해 하반기 물가안정관리를 다짐하기도 했다.

참고

시·도별 주요 물가안정 우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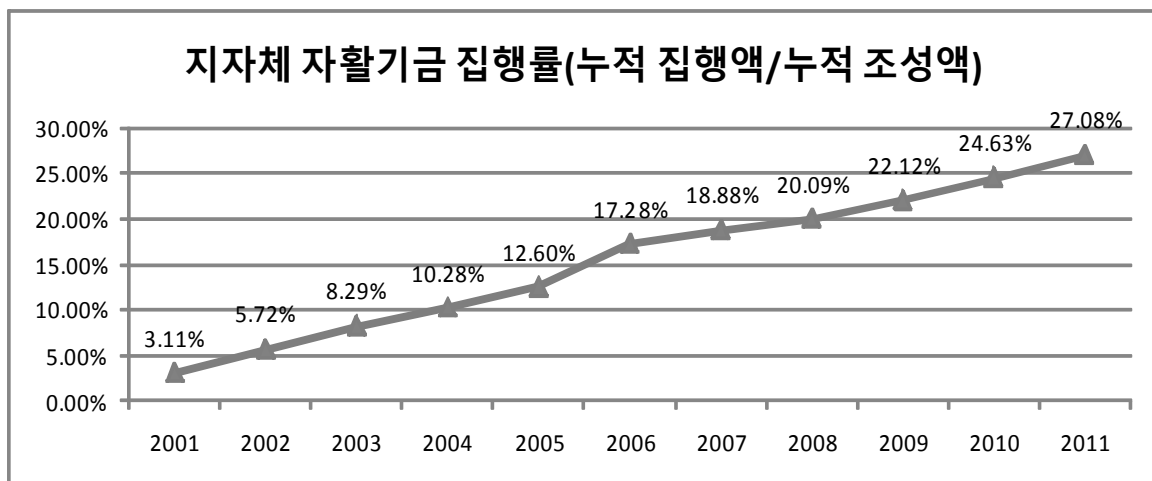
시·도	주요 우수사례
서울	착한가게 지정 확대, 생필품·개인서비스 가격인하 지도 및 가격비교, 농산물 수급안정대책, 직거래장터, 가격표시제 실시 등
부산	착한가격업소 카드수수료 제공, 농산물 직거래, 지방공공요금 결정 모델 연구, 물가앱 개발·보급, 옥외가격표시제 추진 등
대구	전통시장 유통단계 축소, NO-Margin행사 정례화, 농산물 직거래장터, 농산물 인터넷 공동구매 소셜몰 구축 등
인천	물가안정 홍보 극대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및 이용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직거래장터 및 벼룩시장 개설,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광주	특광역시 품목별 물가수준 비교 공표, 착한가격업소 지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물가안정관리 합동단속 및 캠페인 등
대전	착한가격업소 홍보책자 발행 및 이차지원금 확대, 지방공공요금 품목별 책임관제, 청사주변 착한가격업소 우선 지정, 주부물가모니터단 효율적 운영 등
울산	착한가격업소 지정, 주부물가모니터단 운영, 지방공공요금 인상 관리, 울산 할인장터 구축, 온누리상품권 구매·애용운동 등
경기	공공요금 안정관리, 물가안정 아이디어 공모, 전통시장 큰장날(Sale Day), 개인서비스업소 할인가맹Zone, 착한가격업소 Best10 지정 등
강원	도시가스 공급비용 합리화 연구용역, 마을 공영버스 요금 인하,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및 365사랑 실천운동 전개, 전통시장 임대료 인하 등
충북	청주 - 청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물류공급체계 확충,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및 홍보강화, 민·관 합동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등
충남	공공요금 원가분석 연구용역, 민·관 물가관리 거버넌스 구축, 직거래 활성화, 할인판매의 날 운영, 옥외가격표시 특구 지정 등
전북	전국 최초 착한가격업소 지정 운영, 단체장 서한문 발송, 주요서민생활물가 공개, 물가캠페인 전개, 소비자단체와 합동 지도점검 실시 등
전남	지방공공요금 동결기조 유지 및 심의 강화, 착한가격업소 지정확대 및 홍보 강화,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개인서비스업소 가격할인제 추진 등
경북	민생현장 서민생활 해답 찾기, 물가관리시스템 및 웹 공개, 간부공무원 릴레이 전통시장 투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및 이용 확대 등
경남	착한가격업소 안내 앱 개발, 의회협력을 통한 공공요금 인상시기 조정, 짜장면 반값데이 운영, 지역대표 음식 제값받기 운동 확대 추진 등
제주	지방공공요금 동결, 옥외가격표시제 실시, 위생단체연합회 자율가격 안정 유도,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민간단체 시장감시 강화 등

- 한편, 이번에 발표된 16개 시도 우수사례는 책자로 발간하여 전 지자체 및 관계 등에 배포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이날 이삼걸 행정안전부 2차관은 “이 대회는 전국 지역경제 담당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우수사례의 벤치마킹, 자치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깊은 대회”라며
- “대회를 통해 소개된 우수사례들을 전국적으로 공유·확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전국 지자체, 자활기금 집행 늘려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자활기금 운용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저소득층이 자활기금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돕는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지난 2000년 250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바탕으로 설치되었다.
- 지난 10여년간 기금의 안정적 조성을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 결과, 총 3,698억원의 자활기금이 조성되었으나,
 - 기금 손실에 대한 부담 등으로 집행률이 낮고 지자체의 의사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 하지만, 기금 누적 조성액 대비 집행률은 2001년 3%에서 2011년 27%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매년 추가 조성액 대비 집행률 역시 2007년 이후 안정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과 2011년에는 49%로 나타났다.
(☞ 붙임1 참조)



□ 느낌은 나무 기능은 플라스틱, ‘합성목재’

최근 4대강 유역 개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원설비, 상수원보호구역 정비 등에 사용되는 건축용 또는 조경용 자재로 합성목재¹⁾가 널리 채택되면서 민간부문의 합성목재 시장과 더불어 공공부문에서의 시장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합성목재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총 274건에 이르는데, 2002~2008년에 9건 이외에 불과했던 특허출원이 2009년 44건, 2010년 77건, 2011년

1) 합성목재: 목분이나 나무칩에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 인조 목재로서, 천연 목재의 외관과 질감을 그대로 살리면서 나무의 취약한 부분인 내구성, 내수성, 난연성, 항균성 등을 플라스틱의 기능성으로 보완한 건축, 조경자재를 의미한다.

90건으로 최근 수년간 거의 10배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붙임 1 참조).

이와 같이 최근에 합성목재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한 것은 하천 정비 사업을 비롯한 각종 수변시설 개발과 아파트 내 조경시설 또는 공원, 휴게공간 설치 등의 사업에 합성목재의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이 시장선점을 위하여 보유한 기술의 권리화를 서두르고 새로운 제품의 개발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

합성목재 관련 특허출원을 기술 분야별로 보면, 합성목재를 이용한 컨테이너 바닥구조, 보도블록, 데크, 난간기둥, 벤치 등의 제품에 관한 것이 112건(41%), 기본 재료인 목분과 플라스틱의 조합과 더불어 왕겨, 석탄폐석, 황토, 패각의 첨가 등 구성재료에 관한 것이 88건(32%)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합성목재의 제조장치에 특징이 있는 것이 41건(15%), 합성목재의 제조방법에 특징이 있는 것이 33건(12%)을 차지하고 있다. (붙임 1, 2 참조).

한편 시기별로 보면, 합성목재의 개발 초기인 2000년대 초반에는 숯, 황토, 천연섬유의 첨가 등 합성목재의 구성재료에 관한 출원과 건축의 기본소재인 바닥재에 관한 출원이 주로 이루어졌다. 합성목재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2000년대 후반에는 합성목재가 갖고 있는 우수한 디자인 수용성과 내구성을 이용하여 조경용 난간 구조물, 미끄럼 방지용 블록, 방음벽, 핸드폰 케이스 등 제품 자체에 관한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합성목재가 본격적으로 산업화된 기간은 10년

남짓에 불과하여 그 이용이 아직 초기단계이다. 그러나 기존의 목재 자재와 비교하여 뛰어난 성능을 갖춘 합성목재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국민들의 친환경 자재 선호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연구와 제품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관계자는 “합성목재는 천연 목재와 플라스틱의 장점을 살림과 동시에 경제성도 함께 갖춘 자재로서 천연 목재의 자원적 한계, 목재의 휨이나 뒤틀림 문제, 폐목재의 활용 문제 등을 해결하는 기술적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와 관련된 특허출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하였다.

☐ **한국관광을 빛낸 10개의 별 선정**

-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장관 최광식)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남상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국관광의 별 조직위원회’는 **‘2012 한국관광의 별’** 최종 수상자를 발표했다.
- ☐ 수상은 ① 금강 소나무 숲(생태관광자원 부문), ② 수원화성(문화관광자원 부문) ③ 국내여행총정리(스마트정보 부문) ④우리나라 어디까지 가봤니? 56(단행본 부문) ⑤ 영주 선비촌(체험형 숙박 부문) ⑥ 정선 5일장(쇼핑 부문) ⑦ 내일로 티켓(프런티어 부문) ⑧ 대구근대골목(장애물없는 관광자원 부문) ⑨ 포스코(휴가 문화 우수기업 부문)를 비롯하여, 일본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한국관광의 매력을 알려온 공로로 선정된 그룹 ‘카라’ 까지 총 10개 부문의 단체 및 개인이 하게 될 예정이다.

□ ‘한국관광의 별’은 국내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한국관광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기 위해 2010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어 올해 3회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구체적인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일반인 및 전문가 후보추천

2) 다수 추천 기준의 예비후보 선정(부문별 10배수 내외)

3) 범국민 참여 온라인투표

4) 다수 득표 기준의 최종후보 선정(부문별 3배수 내외)

5) 최종후보에 대한 심사위원 평가

○ 최종 수상자는 온라인투표 결과 60% 및 심사위원 평가 40%를 반영하여 선정된다.

□ 올해 국민 참여는 후보추천 건수 총 29,099건(전년 대비 182% 증가), 온라인투표 참여 건수 총 130,088건(전년대비 총 건수 15.3% 증가, 후보별 평균 득표수 62% 증가) 등으로 한국관광의 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012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은 오는 6월 12일 개최되며, 수상자에게는 문화부 장관명의 상패를 비롯하여 상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특히 대표적인 역사문화 자원이자 최근 공연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정동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시상식에서는 수상자뿐만 아니라 참가자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두레소리 국악합창단 공연, 미소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될 예정이다.

- 문화부는 한국관광의 별 선정, 시상을 통해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재확인함으로써 국내관광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관광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후 평가회 등을 거쳐 ‘한국관광의 별’ 시상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복한책읽기



- ☐ 도서명 :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 ☐ 저자명 : 마이클 셸덴
- ☐ 출판사 : 와이즈베리
- ☐ 출판년 : 2012. 4. 24
- ☐ 페이지 : 336쪽
- ☐ 가 격 : 16,000원

요즈음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을까?

그리 많지 않다. 인도인 여성의 대리모 서비스 6250달러, 미국으로 이민할 수 있는 권리 50만 달러, 교도소 감방 업그레이드 1박에 82달러, 대기에 탄소를 배출할 권리 1톤에 13유로, 명문대 입학허가 가격미정, 이러한 것들을 살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2달러, 이마에 광고 문신 새기기 777달러, 제약회사의 약물 안전성 실험대상 되기 7500달러, 용병으로 아프가니스탄 전투에 참가 1천 달러, 한국에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킨 마이클 샌델이 2012년 4월, 시장의 도덕적 한계와 시장지상주의의 맹점을 파헤친 최신작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로 돌아왔다.

시장가치가 교육 환경 가족 건강 정치 등 예전에는 속하지 않았던 삶의 모든 영역 속으로 확대되어 돈만 있으면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이 때, 마이클 샌델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윤리적 물음을 던진다. 과연 시장은 언제나 옳은가?

2008년 금융위기로 세계경제는 파국을 맞았고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지상주의는 통렬한 최후를 맞이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논의의 초점은 현재의 자본주의와 경제구조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고, 시장을 향한 신념은 꺾이지 않았다.

시장이 재화를 분배하고 부를 창출하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이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시장은 언제나 옳다’는 신념은 확신을 넘어 종교와도 같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금융위기로 신용을 잃은 것은 정부다. 공적 담론은 기업과 금융계의 탐욕, 시장의 자율 기능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를 어떻게 바로잡고 합리적인 규제안을 도출해 낼 것인가에 집중되어 왔다.

마이클 샌델은 그러한 제도적인 개선 이전에 시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시장의 자율규제와 정부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시장 거래가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 그리고 도덕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를 훼손하고 변질시킨다면 효율성이란 이름 아래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의 내용은 2012년 봄학기부터 ‘Markets & Morals’라는 이름으로 하버드대학교 철학강의로 개설되었고 강의 첫날, 수강신청에 성공하지 못한 학생들도 몰려드는 바람에 더 넓은 강의실로 장소를 옮겨 강의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이 책은 마이클 샌델 1998년 옥스퍼드대학교의 ‘인간 가치에 관한 태너 강의’에서 논의한 ‘시장과 도덕(Markets & Morals)’에서 출발했으며, 2000-2002년 카네기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으면서 더욱 진전되었다.

2009년 BBC 라디오 4가 주최하는 리스 강연(Reith Lectures)에서 시장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강의로 많은 청중을 감동시켰고, 2011년 세계지식포럼과 2012년 SERI CEO 강연, 채널A의 특별토론 ‘공생발전과 정의’를 통해 국내 지식인과 오피니언 리더들에게도 시장지상주의의 한계를 짚어보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 책은 마이클 샌델이 시장의 도덕적 한계에 대해 15년간 철저히 준비하고 고민하여 완성한 역작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것은 시장논리가 사회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한 시장만능주의의 자화상이다.

저자는 시장의 무한한 확장에 속절없이 당할 것이 아니라
공적 토론을 통해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책은 샌델 특유의 문답식 토론과 도발적
문제제기, 그리고 치밀한 논리로 일상과 닿아 있는 생생한 사례
들을 파헤치며 시장을 둘러싼 흥미진진한 철학논쟁으로 독자를
안내한다.

도덕을 밀어내는 시장, 모든 것을 사고파는 사회를 해부한다.

샌델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사회가 시장경제(market economy)에서 시장사회(market society)
로 옮겨갔다고 진단한다. 시장경제에서 시장은 재화를 생산하고
부를 창출하는 효과적인 ‘도구’인 반면, 시장사회는 시장가치가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으로 스며들어간 일종의 ‘생활방식’이다.

샌델은 기존에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던 영역에 돈과
시장이 개입하며 발생한 가치의 변질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오는 부모들이
 많아지자 벌금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오는 부모의 수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다. 사람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고 믿는
일반 경제학의 논리에 비추어본다면 매우 당황스러운 결과다.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올 때 느꼈던 죄책감이 벌금제도의 도입
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누릴 수 있는 ‘서비스’로 변질된 것이다.
즉, 금전적 인센티브가 규범을 바꾼 것이다(98쪽).

아이들의 성적향상을 위해서 아이가 책을 읽을 때마다 약간의 돈을 주는 것은 어떨까? 단기적으로 아이의 독서량은 늘릴 수 있겠지만 아이는 독서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쯤으로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이들에게 주는 돈은 독서의 즐거움 때문에 책을 읽는 높은 차원의 규범을, 돈을 벌기 위해 책을 읽는 낮은 차원의 규범으로 대체하는, 도덕적으로 타협된 일종의 뇌물이라고 할 수 있다.

면죄부를 팔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은 일이 아닐까? 대학 입학자격을 팔아서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 모두에게 이롭지 않을까? 선물을 받을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지 모를 때에는 상품권을 선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경제학자들은 불평등하거나 강압에 의한 거래만 아니라면 시장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샌델은 성·입학자격·환경·교육 등 전통적으로 비시장 규범의 지배를 받았던 영역까지 돈으로 사고팔면 도덕적 가치가 밀려난다고 반박한다.

즉 어떤 재화는 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될 때 그 가치가 훼손되거나 변질된다는 것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수많은 사례를 통한 치밀한 논증으로, 이처럼 돈으로 사고팔 때 원래의 가치와 목적이 훼손되는 재화의 경우에는 시장에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언제 시장을 이용해야 하는지, 시장에서 거래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려면 건강 환경 교육 국가안보 출산 인권

등의 재화나 사회적 관행이 지닌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샌델은 우리 대신 시장이 가치를 결정하는 시장지상주의가 지난 수십 년간 이 사회를 지배하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도덕적 믿음을 공공의 장에 드러내 보이기를 두려워한 나머지 시장에 속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시장지상주의의 참혹한 결과가 드러난 지금이야말로 임시방편의 제도개선과 보여주기 식의 **‘상생과 공생’**의 외침이 아니라, 시장과 시장의 역할에 대한 냉철한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할 시기다. 샌델은 도덕적, 시민적 갱생에 대한 희망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적 담론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시장의 도덕적 한계와 재화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는 방법을 결정할 철학적 프레임을 제공한다. 결국 이 책은 샌델의 표현처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 저자소개 《Michael J. Sandel》

Michael J. Sandel은 미국의 정치학자로, 1953년 미네소타에서 출생했다. 브랜다이스대학교를 졸업하고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29세에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1982)를 발표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이 책에서 '공동체주의자'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해, 알레스데어 매킨타이어, 마이클 월저, 찰스 테일러 교수 등과 함께 공동체주의의 4대 이론가 중 한 명이자 존 롤스 이후 정의 분야의 세계적 학자로 평가된다. 1980년부터 30년간 하버드대에서 정치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의 정의(Justice) 수업은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하버드대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명강의로 손꼽힌다. 이러한 명성으로 2002년 앤 티 앤드 로버트 엠 벳 교수, 2008년 미국정치학회가 수여하는 최고의 교수로 선정되었다.

MEMO

의 정 정 보

❖ 발 행 일 : 2012년 6월 8일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 (042) 606-5021 / 팩 스 (042) 606-5029